

4.5.14 학생지도규정

제정 2013. 08. 26.

제정 2016. 09. 22.

개정 2021. 02.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학칙” 제65조에 의거, 교수와 학생간의 친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학생들의 학업방향, 진로설정 등 원활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학생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 신입생 지도교수는 각 학과(부)별 소속교수가 분담하여 1년간 지도한다.

② 재학생은 각 전공(학과)별 소속 교수가 분담하여 지도하되, 각 전공 또는 학과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분담한다.

③ 재학생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학생이 졸업시까지 연속적으로 지도한다.

④ 학과(부)에 따라 전공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임명) ① 지도교수는 학과(부)회의를 거쳐 결정하며 각 학과(부) 및 전공소속 전임교수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과(부)장은 지도교수가 퇴직 또는 장기간 공석 등으로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학과(부)회의를 거쳐 학생들을 재분담한다.

제4조(임무) 지도교수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담당학생에 대하여 개별면담 또는 집단면담을 실시한다.

2.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하여 지도하되 특히 학사제도(전공 및 소속변경(전과), 복수전공, 학점관리, 수강신청 등)에 대하여 중점지도 한다.

3. 전공과 연계성을 가진 소집단 학술모임 등을 유도하여 학업의욕을 높이고 나아가서 진로계획에 도움을 준다.

4. 대학생활에 있어 특별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한다.

5.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중인 학생이나, 기타 학생복지처장의 요청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실시한다.

6. 학생들이 집단활동을 실시할 경우 책임자가 되고, 인권침해 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생지도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신설 2016.09.22.>

7.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 필요 시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심층상담을 지원 한다.<신설 2021.02.25.>

8. 취·창업에 대한 전문상담 필요 시 취·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신설 2021.02.25.>

제5조(면담지도) 지도교수는 담당학생에 대해 매 학기 1회 이상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

야 한다.<개정 2021.02.25.>

제6조(집단활동) 담당 학생들이 연구활동, 과외활동, 수련회 등 집단활동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학생복지처에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2>

제7조(업무협약) 지도교수의 임무 수행 중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학과(부)장 및 소속 전공 주임교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학생복지처장과 협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1. 학생지도 관계로 학교 당국에 보고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
2. 분담학생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3.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할 때

제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 또는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